
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도설명자료</h1> | |  |
| | 배포일시 | 2021. 2. 18.(목) 총 1매 | |
| 담당 부서 | 도로건설과 | 담당자 | · 과장 이정기, 사무관 김갑중, 주무관 노영수 ☎ (044)201-3907, 3893 |
| 보도 일시 | | 즉시보도 가능합니다. | |

'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'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별로 도로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.

<주요 보도내용(파이낸셜, 2.18)>

◆ “자율주행차 시대에 시속 50km? 마차 끌고 다니자”

- 국토부, 4월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 하향조정에 네티즌 반발 거세

□ 자동차 등의 속도는 '21.4.17일부터 주거지역·상업지역 등의 일반 도로에 대하여 50km/h 이내로 주행하도록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9조가 이미 개정('19.4.17, 행정안전부령 제109호) 되었습니다.

○ 금번 행정예고한 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”은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, 이미 개정된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과 안전속도 5030 등에 따라 속도별로 차로의 최소 폭*, 경사 등 도로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.

* 예) (차로의 최소폭) 20~40km/h : 2.75m, 50~60km/h : 3.00m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: 개정 2019. 4. 17. → 시행일 : 2021. 4. 17.

제19조(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도로(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)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**50킬로미터 이내**. 다만, 시·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김갑중 사무관, 노영수 주무관(044-201-3907, 38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